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29호
----------	-----------

제출연월일 2007. 03. 30.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5조)

-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
-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
-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나. 재원의 조성 및 운영경비 조달(안 제8조)

- 재원의 조성 : 출연금 및 수익금
- 운영경비 : 보조금 및 수익금

다.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함(안 제9조)

라. 이사회는 이사장(부시장) 및 이사로 구성함(안 제10조)

마.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5억원

(확보 2억원⇒운영비, 미확보 3억원⇒법인자본금)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7. 1. 19 ~2007. 2. 1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설립)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고 한다)라 한다.

제4조 (센터의 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
3. 센터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4. 센터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
6.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6조 (정관에 관한 사항) ①센터는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원조성 등) ①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과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2.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센터의 운영경비는 센터 운용수익금, 정부와 경상남도지사 및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임원) ①센터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부시장” 이 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 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지도 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민법】

제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條 (設立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개정 2006.3.29>)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6.3.29>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한국스카우트연맹
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유스호스텔연맹
7. 한국청소년상담원
8.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9.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 한국청소년수련원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3.29>

1.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광역시·도 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국가청소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